

학점인정 심의 규정

제정	2017.04.17.
개정	2017.06.01.
개정	2017.09.25.
개정	2018.03.20.
개정	2019.10.28.
개정	2022.02.21.
개정	2024.07.01.
개정	2025.06.0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점인정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학칙 제45조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 및 의결) ① 학점인정 심의를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구성한다.
 ② 위원회는 교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으로 스쿨당 교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.
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의록 및 회의참석 서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.
 ⑥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후속 업무와 위원회 관리는 교무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.

제3조(심의대상 및 심의적용범위) ① 학점인정 심의대상은 전문학사 학위과정 재학생으로 한다.
 ② 학점인정 심의적용 범위 및 기준은 [별표1]에 따르며, 각 항목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. 단, 기타 해당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.
 ③ 학점인정은 학칙 제35조 ②항에 의해 교양, 전공, 일반으로 이수상태를 구분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, 이 수구분에 따라 인정된 학점은 “성적”으로 산출하지 않는다. 단,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위원회에서 동일한 교과목의 이수가 인정되는 경우 “성적”으로 산출할 수 있다.

제3조의1(심의 외 학점인정) 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입학사정시 심의하며, 학칙 제57조 ②항의 3학년 수료학점까지만 인정하되 “성적”으로 산출하지 않는다.
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①항 1호의 가목과 나목에 의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을 인정한다.
 ③ 전과가 허가된 자의 전과 전 취득한 학점은 학적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①항에 의해 전과절차 중 모집단위(전공)에서 인정한다.

제4조(인정 시기 및 절차) ① 학점인정 심의는 재학 중 1회에 한해 심의하며, 군복무 중 취득학점에 대해서는 복학 학기 종료 전에 추가 심의할 수 있다
 ② 학점인정 심의 절차는 학기개시일 후, 정해진 기간 중 학생의 신청 및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에 대해 전공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.

제5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

를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년도) 이 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8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07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9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. 학점인정 기준표]

구분	항목	상세내용	증빙서류																		
입학 전	전적대학 학점취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고등교육법」 제23조 ①항 1호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5조 ①항 1호의 다목에 의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/2 범위 내에서 인정가능 단, 정원 외 전형 전문대졸이상자로 입학한 학생은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을 5학점까지 교양선택으로 인정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적증명서 과목별 수업(강의)계획서 혹은 교수요목과 같이 교과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																		
	학교·연구기관·산업체 경력인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」 제2조에 의해 산업체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근무 혹은 프리랜서 경력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/4 범위 내에서 인정가능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전공일치 여부</th> <th>경력기간</th> <th>인정 비율</th> <th>이수 구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일치</td> <td>1년 이상</td> <td>100%</td> <td rowspan="3">전공 선택</td> </tr> <tr> <td>6개월 이상~1년 미만</td> <td>50%</td> </tr> <tr> <td>3개월 이상~6개월 미만</td> <td>25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불일치</td> <td>1년 이상</td> <td>50%</td> <td rowspan="2">일반 선택</td> </tr> <tr> <td>6개월 이상~1년 미만</td> <td>25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전공일치 여부	경력기간	인정 비율	이수 구분	일치	1년 이상	100%	전공 선택	6개월 이상~1년 미만	50%	3개월 이상~6개월 미만	25%	불일치	1년 이상	50%	일반 선택	6개월 이상~1년 미만	2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무경력 증명서 프리랜서 계약서 기타 사업자등록증 등 산업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
	전공일치 여부	경력기간	인정 비율	이수 구분																	
	일치	1년 이상	100%	전공 선택																	
6개월 이상~1년 미만		50%																			
3개월 이상~6개월 미만		25%																			
불일치	1년 이상	50%	일반 선택																		
	6개월 이상~1년 미만	25%																			
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학점취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 ④항, 제32조 또는 제33조 ③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/2 범위 내에서 인정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학점인정 관련 서류 일체 (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발급 서류) 																			
편입 학점취득	1학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적대학 학점 불인정 전공 및 교양 학점 졸업이수 기준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적증명서 과목별 수업(강의)계획서 혹은 교수요목과 같이 교과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																		
	2학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칙 제57조 ②항의 1학년 수료학점까지 인정가능 전공별 졸업이수 기준 적용 및 교양과목 졸업이수 기준 미적용 																			
	3학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칙 제57조 ②항의 2학년 수료학점까지 인정가능 전공별 졸업이수 기준 적용 및 교양과목 졸업이수 기준 미적용 																			
입학 후	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 중 학점취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·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 취득하면 학기당 6학점 이내, 연 12학점 이내 인정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적증명서 																		